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02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가 지급된 바

있으며, 추후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외국인주민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외국인주민에게 균등한 행정혜택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